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. 10. 16 선고 2023가단398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조합

소송대리인 B, C

피고D

소송대리인 E

변론 종결2024. 8. 7.

판결 선고2024. 10. 16.

주 문

- 구미시 F 전 1,425m²에 관하여,
가. G과 피고 사이에 2023. 9. 1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G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3. 9. 11. 접수 제31578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피고는 2013. 4. 5.경 G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(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3드단1133호), 2013. 6. 18.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(이하 '이 사건 이혼조정'이라 한다).

- 피고와 G은 이혼한다.
- G은 피고에게 2013. 8. 31.까지 2,000만 원을 지급하되,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- 쌍방은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, 재산분할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나머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.

나. G은 2015. 3. 31.경 원고와 사이에 이자율 연 10.43%, 약정 연체이자율 연 13.64%, 대출만기일을 2025. 3. 31.로 정하여 대출금액 13,900,000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는데(이하 '이 사건 대출금'이라 한다),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납입을 장기간 연체하여 2023. 8. 1. 기준으로 원고에게 상환할 대출금 합계액이 14,497,392원(= 대출잔액 14,012,892원 + 이자 484,500원)에 이르렀다.

다. 원고는 2023. 8. 1.경 G을 수신인으로 하여 '2023. 8. 16.까지 이 사건 대출금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정차(강제경매 또는 압류절차)를 진행할 예정'이라는 내용의 대출금 상환 독촉장을 G의 주소지 '구미시 H'로 발송하였고, 피고도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.

라. 한편 구미시 F 전 1,425m²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1995. 7. 2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. 7. 25.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G은 2023. 9. 11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 또는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고,

같은 날 구미시 I 묘지 380m²에 관하여도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마. 원고는 2023. 10. 31.경 G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(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3차전4262호 대여금 사건), 2023. 11. 1. 'G은 원고에게 14,012,892원과 그 중 13,900,000원에 대하여 2023. 10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.64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정본이 발령되어, 2023. 11. 15. G에게 송달되었다.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2015. 3. 31.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23. 9. 11. G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,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G의 채무초과 여부

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구미시 I 묘지 380m²를 소유하고 있었으나,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14,497,392원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, 이 사건 이혼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20,000,000원과 이에 대한 2013. 9. 1.부터 2023. 9. 11.까지의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G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.

다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,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, 한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1999. 11.

12.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바,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G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소유 부동산 중 담보가치가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의 자력을 부족하게 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하는 행위여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, 또한 G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G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라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이혼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왔는데,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(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G은 이 사건 이혼조정이 성립한 후 10년 넘게 피고에게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, 피고가 이에 대한 지급을 독촉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, ② 그런데 G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변제독촉을 받은 직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점, ③ 피고와 G은 이 사건 이혼조정 이후에도 같이 거주하였고 G이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변제독촉을 받았을 당시에 동거하고 있었던 바,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이혼조정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루어진

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G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.

마.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선영